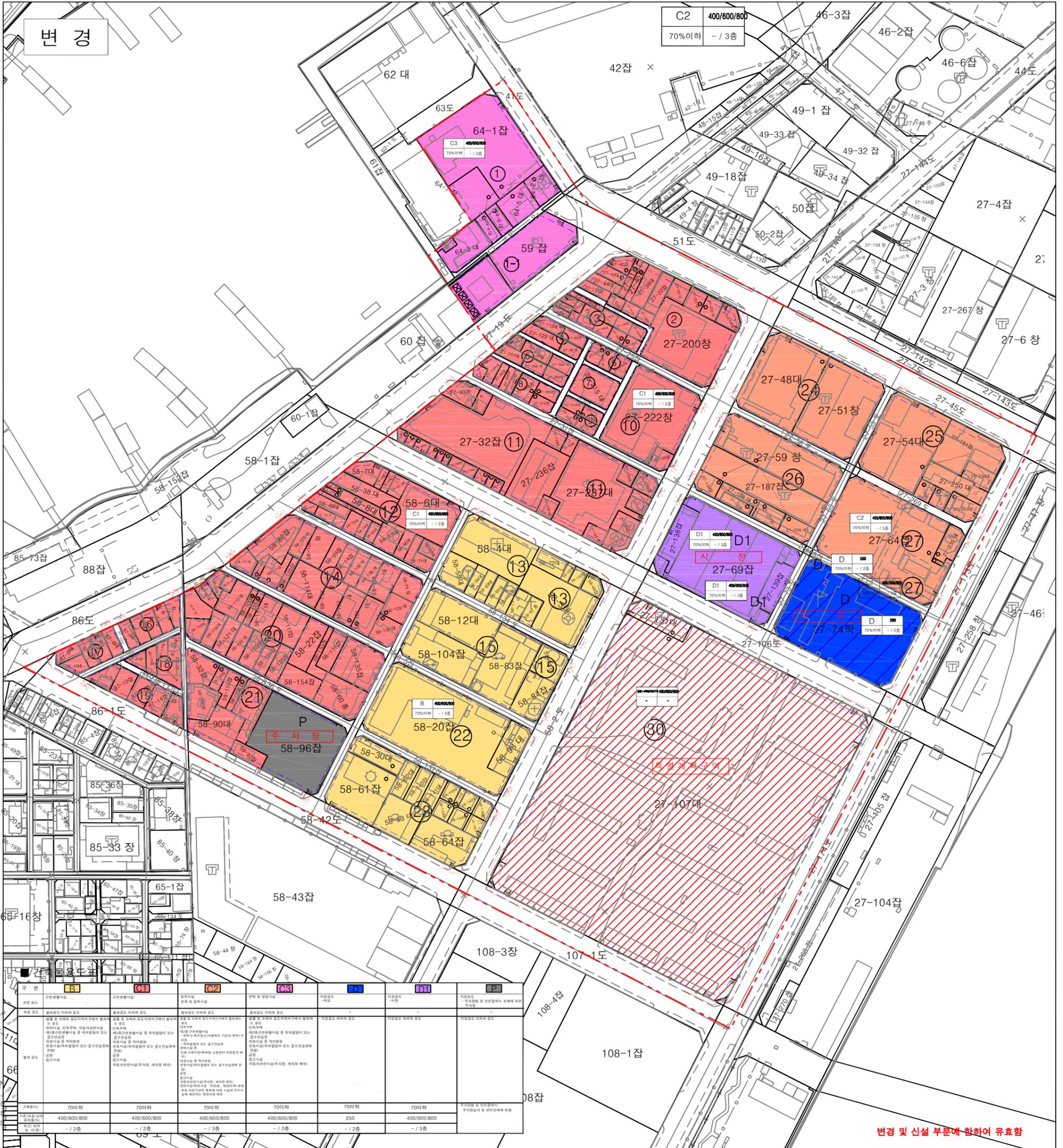


도시관리계획(항동1-2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

-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-



변경 및 신설 부분에 한하여 유효함

구분	작성자	입안 및 결정권자	
	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속	도시개발과	도시개발과	도시개발과
직위	-	-	도시계획담당
직명	지방시설서기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
성명	조혜림	김시환	임정환
확인인			

- 범례 -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특별계획구역
- 가구선
- 가구번호
- 공동개발(권장)
- 건축한계선
- 차량출입불허구간
- 공공보행통로
- B용도
- C1용도
- C2용도
- C3용도
- D용도(학교)
- D1용도(시장)
- P용도(주차장)

용도구분: 기본/허용/상향 목적용
건축용: 최고/최저높이

Scale = 1 : 1,500

지정권자	인천광역시 중구청장
지정일자	2019년 3월 18일
고시년도	2019년 3월 18일
고시번호	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9-34호
작성자	인천광역시 중구청장
작성년월일	2019년 3월 일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	인천광역시 중구청장